

2001. 5. 17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
-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-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	2001.5. 8	5. 9	5. 14	5. 14	문화관광과장
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세정과장
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여성회관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- 충주시문화상 시상에 관하여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수상대상자 선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함

#### 2) 주요골자

- 위원장의 임무 추가

-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허위, 과장작성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

- 수상후보자의 제한범위 확대

-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자를 추가

### ○ 문화상의 철회

- 시장은 문화상을 받은자의 수상전 경력이 수상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어 물의가 야기된 때에는 수상을 철회할 수 있다. 단, 문제제기 기한은 3년으로 한다.

## 나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충주시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함.

### 2) 주요골자

-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과세함.
  - ⇒ 차령적용범위 :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(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봄)
  - ⇒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:  $A/2 - (A/2 \times 5/100)(n-2)$   
 $A$  : 연세액,  $n$  : 차령( $2 \leq n \leq 12$ )
- 주행세 세율을 1,000분의 32에서 1,000분의 115로 함.
- 도축세의 시가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 
⇒ 승인없이 시장이 조사·결정함.
- 기타 조문정리
  - 농지세 할주민세 ⇒ 농업소득세 할주민세로
  -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⇒ 영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함.

## 다. 충주시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는데 있음.

### 2) 주요골자

- 회관 이용시간의 조정(제3조)
- 사용허가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 생략(제5조)
- 특별사용료 징수조항 폐지
- 유료공연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조항 폐지
- 공공시설에서의 상행위 규제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(제5조 제4호)
- 시설사용료등 면제 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(제10조 제4호)

## 3.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

### 가. 충주시문화상조례 중 개정 조례안

- 수상후보자 제한규정 제11조에 추가로 신설한 “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은 자”에 대하여는 너무 포괄적 및 추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도 곤란하다고 생각됨.

- "시장은 문화상 받은 자의 수상전 경력이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수상을 철회할 수 있다."로 문화 상의 철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미 수상 받은 사람의 수상을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신력이 실추되고 행정의 안정성에도 손상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상할 수 있음.

#### 나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- 지방세법이 2000. 12. 29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
- 충북도에서 각 시·군 세무, 재무과장회의시 시·군세 조례 개정안을 시달 각 시·군의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.

#### 다.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- 여성회관 예식장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시 사진 및 비디오 업주에게 특별사용료인 사진 30,000원, 비디오 10,000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민원야기가 발생되어 사진촬영 30,000원은 폐지하고 비디오 촬영 10,000원은 전기 사용 시에만 혼주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
-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.

## 4. 질의.답변 요지

### 가.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문제제기 기한이 3년이면 너무 긴기간은 아닌지?

○답변 :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수 있음.

▶ 질의 : 공이 있은후 과가 발견됐다고 상을 박탈할 수 있는지?

○답변 : 상에 대한 의지의 표현임.

▶ 질의 : 공적조서 작성후 현지 확인은 하는지?

○답변 : 지금까지 하고 있음.

▶ 질의 : 철회시 부상까지 회수하는지?

○답변 : 철회하면 당연히 회수해야 함.

▶ 질의 :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심사한 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?

○답변 : 철회할 수 있다는 길은 열어 놓은 것이지 철회가 목적은 아님.

▶ 질의 : 심사위원이 현지 답사도 없이 실무자가 올린 것으로만 형식상 심사하는 것아닌지?

○답변 : 관련 규칙 강화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음.

▶ 질의 : 철회시 본인이 불복할 경우 대책은?

○답변 : 충분히 연구·검토 하겠음.

### 나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제28조 차령이 12년이 지난 차량은?

○답변 : 12년을 상한으로 보고 있음.

## 다.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조례 2/3이상이 개정되면 전문개정 해야 하는데?

○답변 : 주요내용이 2/3이상 개정되는 것은 아님.

▶ 질의 : 년 예식장 사용 횟수는?

○답변 : 작년에 170건 정도됨.

▶ 질의 : 전기사용료 10,000원을 징수하지 않으면 않되는지?

○답변 : 우리시 관내 예식장에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## 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(“별지”)

나.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## 6. 붙임

가. 충주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
나. 충주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
다.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
[별지]

##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중 제11조 제3호를 “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”로 수정하고, “제12조 2(문화상의 철회)”를 삭제한다.

### <수정안대비표>

개정안	수정안
제11조(수상후보자의 제한) <생략> 1~2. <생략> 3. 사회적으로 물의를 <u>야기하여 지탄을 받은 자</u> .	제11조 <현행과 같음> 1~2. <현행과 같음> 3. ----- <u>야기한 자</u> .
제12조의 2(문화상의 철회) 시장은 문화상을 받은 자의 수상전 경력에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수상을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상 후 3년 이내로 제한한다.	제12조의 2(문화상의 철회) <삭제>